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용차량의 관리규정 신설 등 〉

■ 백선희 의원(의안번호 제2213157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군수품 정의조항에 ‘물품’ 내용 구체화(안 제2조)	3
2. 군용차량 관리조항 등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 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9. 22.
3. 회 부 일 : 2025.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 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 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3).

Ⅲ. 검토의견

1. 군수품 정의조항에 ‘물품’ 내용 구체화(안 제2조)

□ 현행은 군수품을 국방관서(국방부, 합참 등)와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은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 ----- ----- ----- ----- ----- <u>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을</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¹⁾에서는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 정의조항에서는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관서(국방부, 합참 등)와 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만으로는 국방관서 등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수품의 정의로 물품에 대해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서 군수품에 대한 인지를 높이려는 것으로, 법률상 군수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과 집행기관 모두가 군수품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 개정안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군수품의 내용은 영구적으로 군수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로서 군수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1)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높지 않아 잦은 법률 개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법 제3조에서는 군수품을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하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별표에서는 전비품과 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변경가능성이 있는 군수품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종류, 구분, 범위 등의 일부 내용을 예시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면 해당 내용의 대표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예시적으로 들고 있는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이 전체 군수품을 대표하는 물품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별 표]

전 비 품

1. 전투장비

분 류	세 목
화 력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류와 이에 관련되는 장비 및 사격 통제기기
특수무기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류와 방공통제 장비류(지상 및 함상)
기 동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일 반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통신전자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 탐지장비, 전자전장비 등
함 정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등
항 공	항공기, 직접 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등
기 타	기타 전투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용장비 및 기재

2. 전투지원장비

분 류	세 목
기 동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일러 등
일 반	도하장비류
통신전자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화력, 특수무기, 통신전자, 기동, 일반, 함정, 항공, 정밀측정	전투장비의 검사시험 및 정비용장비
기 타	기타 전투지원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지원용 장비 및 기재

- 참고로 「군수품관리법」의 일반법인 「물품관리법」에서도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물품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의 일반법인 「물품관리법」에서도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각 물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점, 현재 군수품의 분류는 대통령령과 국방부령으로 용도별·기능별·성질별 기준으로 군수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법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군용차량 관리조항 등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 개정안은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군용차량의 등록,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군 표준차량의 범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절 <u>처분</u> <u><신 설></u>	제4절 <u>운용·처분</u> 제13조의3(군용차량의 관리) ① 국 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용차량의 사용 목적, 정비 상 태, 내용연수, 보안 수준 등을 고 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군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 다. 1. <u>군용차량의 등록, 재물조사 및</u> <u>불용결정</u> 2. <u>정비 이력 및 사고 이력의 기</u> <u>록·관리</u> 3. <u>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u> <u>탑재된 차량의 분해·폐기 절차</u> 4. <u>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u> <u>고 및 조치</u> 5. <u>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u> <u>사항</u>

	② <u>군용차량 중 병력 및 물자 수송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국방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설계·제작된 군용화물차(이하 ‘군 표준차량’이라 한다.)의 주요 구조 및 장치·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안전 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	---

□ 2024년 12월 19일 충북 충주의 19전투비행단 내에서 저녁 식사 후 부대복귀 중 K-311 군용 수송트럭이 차량쏠림 현상 등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탑승자 총 15명(운전석 3명, 화물칸 12명) 중 화물칸 탑승자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로 인해 탑승자 총 15명 중 2명 사망자 및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동 사건에 대해서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국회법」 제123조 제1항²⁾에 따른 국민동의청원 형식으로 제출(2025.1.9. 회부)되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동 사건 발생 후 국방부는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의 정비를 통해 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

2)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동의청원 동의자수: 5만명 이상

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수송 안전관리) ① 모든 군용차량은 차량별 용도에 맞게 운용한다.

②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운전하려는 차량에 적합한 군용차량 운전면허(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작전이나 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각군 규정을 발전시킨다.

□ 한편 군용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군수품의 등록, 불용결정 등은 현재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군 표준차량의 범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군용차량 이용 군 병력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및 군 표준차량의 범위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군 표준차량이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은 군수품 중 사고가 빈번한 군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만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군용차량을 포함하여 다른 품목의 군수품 관리사항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군 표준차량의 범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군 표준차량 관리의 체계성을 재수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군용차량을 포함하여 다른 품목의 군수품에 대한 범위·관리에 관한 사항의 근거마련도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는 군용차량의 등록,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 정비 이력 및 사고 이력의 기록·관리, 보안 장비 또는 군사 정보가 탑재된 차량의 분해·폐기 절차 및 운용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등을 법률조항의 각 호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동 내용들은 다소 기술적·세부적인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

하기보다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군인 및 군수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 안전 훈령」에 규정되어 있고, 특히 군용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군 표준차량과 같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한 군수품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국방규격³⁾을 제정하고 목록화⁴⁾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수품관리법」 등의 법령과 이를 구체화한 행정규칙인 「군수품 관리 훈령」 등에서 군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있으므로 군수품 중 군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만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군용차량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직접적으로 살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용차량 등 전체 군수품 운용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별도의 ‘절’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

4) "목록화"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식별하고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자료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문 의 처
02)6788-5308